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및 안내

The Current System of Access to Information

홍준의

총무처 행정능률과 과장
Hong, choon-uie./Division Director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Division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제정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여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국민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 註>

정

보공개제도는 1992년에 청주시 의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청주시 의회에서 제정한 정보공개조례의 법적 효력에 관한 1992년 6월 23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는 사실상 현재도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대법원은 청주시장이 청주시 의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 등 사건판결(대법원 1992년 6월 23일 선고 92추 17)에서 1991년 6월 19일에 공포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동사무관리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되고(제2조)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시행

또는 접수한 모든 문서는 공문서이며(제3조제1호)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제33조제2항)하고 있는 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허가여부는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제외한 일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비록 대통령령이지만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령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현행법령 체계내에서도 정보공개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사법부에 판결에 의해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 법 등 단일법령에서도 개별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의 근거를 두고 있다. 총무처에서는 문민정부 출범과 때를 맞추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법의 조속 제정추진은 물론, 법 제정전이라도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법 제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정보공개제도의 시행기반 구축을 위하여 94년 3월 2일에 총리훈령 제 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또한, 동 지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94. 5~6월에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점검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94년 7월 1일부터 동 지침이 발효되어 정보공개제도가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공개법 제정이전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제정·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내용중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켜야 할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일반국민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따른 공개업무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 운영지침의 적용범위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직접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며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보공개에 관한 자치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조례를, 그리고 자치조례가 없는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단체의 경우는 이 지침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되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적극 지도·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한 대상정보는 사무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의된 공문서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으로써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되 문서이외에 도면, 필름, 디스크 등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신문, 잡지 등 일반자료나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없이 자유로이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제외된다.

다음은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지켜야 할 업무처리기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국민은 행정정보공개청구서(행정기관에 비치)를 각급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접수창구(문서를 총괄하는 문서과에 이미 준비됨)에 제출하면된다. 편지나 우편, 전신, 전화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둘째, 접수를 받은 창구에서 행정정보공개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를 문서를 처리하는 처리과로 송부하면 처리과에서는 이를 접수한 후 해당문서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과장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하되 과장이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당해 기관에 설치·운영하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자문을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써 관계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이나 제3자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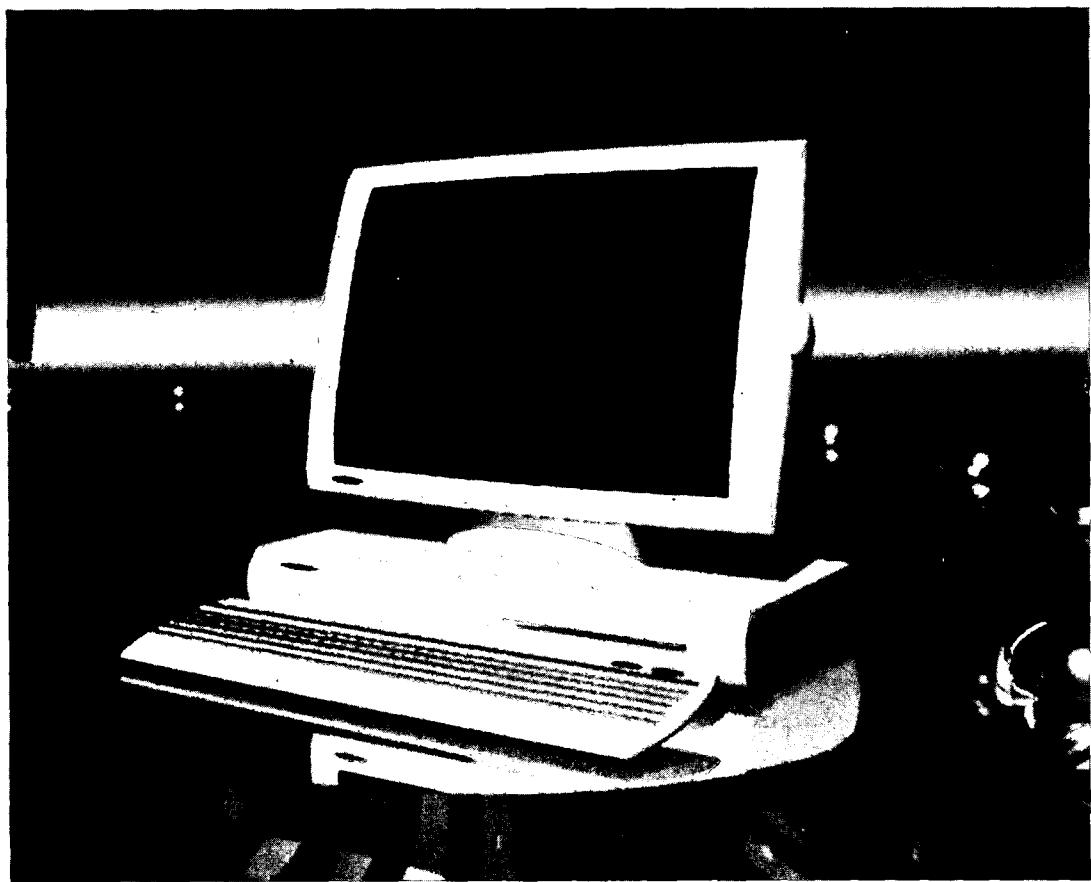
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각급행정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① 보안업무규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 되는 정보 ③ 범죄의 예방·수사·소추·형의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④ 인

격·신분·종교·재산·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생명·신체·자유·건강 등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⑥ 법인이나 사업자등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⑦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기관·단체 등)로부터 취득한 정보 ⑧ 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의사결정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⑨ 행정기관의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인사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⑩ 기타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이다. 또한 공개에 따른 행정기관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여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는 공개청구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공개청구 받은 정보의 내용중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분리를 하여도 공개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넷째,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문서처리과의 장은 공개·비공개여부 결정 즉시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결정 통지시에는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또는 공공도서관 등에서 구입이나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구입이나 열람토록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비공개결정통지시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이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정,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행정기관이 공개여부에 관하여 제3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공개·비공개여부에 관한 결정내용을 제3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개청구된 정보의 처리기한을 보면 공개·비공개 결정은 가능한한 빠른 시

일내에 처리하되 최소한 당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써 의견조회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처리가능기한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정보공개는 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하되 공개장소는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는 당해 기록물의 원본을 직접 열람·복사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원본의 공개로 당해 기록물의 오손·파손되거나 당해 정보를 일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할때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사본으로 복사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를 공개시에는 담당직원 입회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청구인이 기록물 내용을 고치거나 오손·파손할 우려가 있을 경

우에는 공개를 중지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지침의 발효일은 '94년 7월 1일로써 우선 정보공개가 가능한 '92년도 이후 생산문서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그 이전문서도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공개를 하되 '91년 이전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목록을 10년 단위로 '95년부터 소급하여 정리하도록 하므로써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른 시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 위 지침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 즉, '94. 12. 31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보면, 총무처 소속기관으로서 영구 및 준영구 문서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만 총 9,499건이 접수되어 열람·복사등의 방법으로 모두 공개한 바 있고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그리고 그동안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의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 특정지역 모든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복사 요구하거나 이미 발간된 모든 법령집의 복사를 요구하는 등 원활한 행정집행을 저해하거나 정보공개제도의 근본취지를 악용하는 일부의 사례도 있었는바, 제도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하여 왔는바, 앞으로 이 정보공개제도가 활성

화 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이 제도를 주관하거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관련공무원들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함으로써 행정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제도자체도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이 조속히 법령화되어 완벽한 모습과 내용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dc*

(그림1) 정보공개운영현황(94. 12. 31. 현재)

기 관 명 계	신 청 건 수 3,051	공 개 건 수 2,956(96.9%)	비 공 개 건 수 95
재정경제원	1	1	-
총 무 처	2	1	1
국가보훈처	3	1	2
외 무 부	407	380	27
내 무 부	1	1	-
법 무 부	1	1	-
교 육 부	1	1	-
문화체육부	3	2	1
농림수산부	11	11	-
통상산업부	3	3	-
환경부	8	7	1
보건복지부	3	3	-
노동부	97	96	1
건설노동부	7	7	-
국 세 청	8	3	5
경 찰 청	115	115	-
병 무 청	2	2	-
산 립 청	1	1	-
공업진흥청	5	5	-
철 도 청	1	1	-
서울특별시	57	52	5
기타지방자치단체	2,314	2,261	53